

학생 준칙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학생준칙은 학칙에 의거한 학생들의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명을 완수케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장 학생증

제 2조(교부) 신(편)입생 및 재학생은 등록절차를 완료한 즉시 학생증 교부를
받는다.

제 3조(학생증 관리) 학생은 발급된 학생증이 현금 입.출금기능, 직불카드기능
등 통합된 카드이므로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
록 카드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만약 카드를 분실한 경우 즉시 학생과 및
카드발급은행 지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4조(학생증 휴대) ① 학생은 교내 외를 막론하고 항시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본교 관계 교직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학생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자는 수강, 수업 또는 도서 열람실의 출입을
금한다.

제 5조(대여 및 변조금지) 학생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으로
학생증을 변조할 수 없다.

제 6조(재교부)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기하여 학
생처에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한다. 단, 재 신청시 소정의 재발급료를 납부하
여야 한다.

제 7조(반납) 학생증은 졸업, 퇴학, 제적 및 유효기간의 경과 등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학생과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3장 집회, 게시, 인쇄물의 배포

제 8조(구성요원) 본교에서 허락하는 집회, 단체는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그 구성요원은 본교 학생에 한한다.

제 9조(징계) 학생의 집회 또는 단체 행위가 설치목적에 위배되고 학교내외 질
서를 문란케 할 때에는 이를 학칙 제10장 40조에 의거 징계처분한다.

제10조(허가) 교내 외를 막론하고 본교 학생의 모든 집회 및 결사는 학칙 제
18장 60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장소 사용허가) 집회장소 사용 허가는 집회 예정 3일전까지 반드시 학생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집회시간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락되며 시설 사용 시에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공고물의 사전허가) 교내에서 학생의 광고, 인쇄물 등을 붙이거나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단체가입 및 활동금지) 학생은 정당 또는 이에 관련되는 사회단체에 가입 또는 활동할 수 없다.

제14조(공지사항 주지) 학생은 항상 학교 게시판의 공지 사항을 주지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자치 단체의 조직운영

제15조(승인) 학생 자치단체는 학년초에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활동내용과 임원을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활동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학생회 및 각 학회 회장은 매 학기초에 그 활동계획을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 및 결산서 제출) 학생회 활동에 따르는 연도별 운영계획서 및 경비지출에 대한 예산서와 결산서를 학생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대외 행사 참가

제18조(행사참가) 학생이 대외 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9조(참가금지) ① 학생은 총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단체로 참여 또는 응원을 할 수 없다.

② 시험기간 중에는 대외 행사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국가적 행사는 예외로 한다.

제20조(동원) 본교 학생은 총장의 동원 지시가 있을 시는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제6장 봉사활동

제21조(봉사활동) 학생은 일정한 교회에 출석하여 봉사해야 하며 학생실천카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포상 및 징계

제22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지도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학칙 제10장에 의거하여 학생상벌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시행) 본 규정을 시행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제청과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시행한다.

제24조(직권) 총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포상)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와 사회발전에 공적을 남긴 학생.
2.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였거나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
3. 사상이 건전하고 지도능력이 탁월하여 총학생회(자치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학생.

제26조(징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본교의 건학정신을 위배한 학생.
2.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학생.
3. 타 학생에게 학생 지도상 악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학생.
4. 총장의 승인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초래한 학생.
5. 그 밖의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
6. 징계는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하며, 근신은 7일 이내, 유기정학은 3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본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정지된다.
8. 총장은 징계 대상자나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태도가 현저할 때에는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포상.징계 세칙) 포상, 징계의 발의와 심의, 징계.해제 등의 절차와 시행에 관한 세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적용) 본교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의 절차와 시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및 이 세칙에 따른다.

제2조(포상의 종류 및 대상) 포상의 종류는 학업상, 근면상, 공로상으로 한다.

1. 학업상 : 재학 4년 간의 학업성적이 전교에서 최 우수한 학생과 각 전공별에서 최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2. 근면상 : 학년 도중에 근면하여 결석이 없고 평소 품행이 방정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3.공로상 : 사상이 건전하고 지휘 통솔력이 있어 학교발전에 기여하고 총학생회 자치 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제3조(포상의 발의) 상기 2조의 포상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생처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포상을 발의할 수 있다.

1. 공정조서 1부.
2. 학생지도위원회 의견서 1 부
3. 학과장 추천서 1부.

제4조(징계의 근신 종류별 대상) 징계는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한다.

① 경 고

1. 교수실 및 사무실 출입 시 걸레한 자
2. 식당 및 휴게실에서 풍기를 문란케 한 자
3. 교내의 환경을 더럽힌 자
4.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자
5. 교내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한 자
6. 과실로 교구 및 시설을 파괴한 자
7. 허가를 얻은 광고, 인쇄물 등을 교내의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 붙이는 자

② 근 신

1. 경고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2. 교직원에게 불손한 자
3. 단체 행사에 무단 이탈한 자
4. 교내 게시물을 무단히 제거하는 자
5. 시험 중 다음과 같이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계획한 자
가. 타인에게 답안을 보여주거나 불러 준 자
나. 타인의 답안을 보고 받아서 쓰는 자
다. 참고가 금지된 서적, 노트 등을 보고 답안을 작성한 자
라. 부정행위 쪽지를 보고 답안을 작성한 자

③ 유기정학

1. 근신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2. 교내.외에서 부녀자를 희롱한 자
3. 교내에서 음주한 자 및 음주하고 등교한 자
4. 교외에서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거나 학생 신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 자
5. 학우에게 협박 또는 폭행한 자
6. 시험 중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이를 계획한 자
가. 사전에 답안 작성을 하여 본 자

- 나. 대리 응시를 한 자와 이를 응시케 한 자
- 다. 시험장 외부에서 답안을 작성하여 투입하거나 또는 방조한 자
- 라. 답안지를 교환하여 작성한 자
- 마. 자기가 작성한 답안지에 다른 학생의 학번, 성명 등을 기재하거나
또 다른 학생이 작성한 답안지에 자기의 학번, 성명 등을 기재한 자
- 바. 감독자의 검인을 위조하거나 훼손한 자
- 사. 기타 위에 준하고 부정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자

④ 무기 정학

- 1. 유기 정학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 2. 이유 없이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
- 3. 학우에게 집단폭행을 한 자
- 4. 교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광고, 인쇄물 등을 붙이거나 배부한 자
- 5. 고의로 학교시설 또는 교구를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이를 외부에 반출한 자
- 6. 타교 학생으로 대리시험을 응시케 한 자
- 7. 학교의 허락 없이 학교와 관련된 교내 외 시설물을 무단 점유한 자

⑤ 퇴 학

- 1. 무기정학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 2.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작이나 선동을 한 자
- 3.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 4. 허가 없이 씨클을 조직하거나 집회를 한 자
- 5. 교직원에게 반항하여 그의 신원을 심히 전락시킨 자
- 6. 교내에서 불온 선전물을 붙이거나 살포한 자
- 7. 특정으로 타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자
- 8. 교내 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 9.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전혀 없다고 인정된 자
- 10. 학교의 허락 없이 학교와 관련된 교내.외 시설물에 무단침입, 또는
점거하여 파손하거나 업무에 방해를 초래한 자

제5조(징계의 발의) 상기 제4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생처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교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 1. 사건 경위서 1부.
- 2. 본인의 진술서(경우에 따라 생략할 수 있음)
- 3. 학생지도위원회 및 해당 학과장의 의견서 1부

제6조(징계자의 특별지도) 퇴학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기간 중 분담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계속적인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7조(심의절차) 포상자와 징계자에 대한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포상대상자.

가. 학생처장은 포상대상자로 제2조의 조건을 갖춘 학생이 추천되면 구비서류를 갖추어 교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나. 학생처장은 교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품의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징계 대상자

가. 학생처장은 제5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교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나. 학생처장 또는 교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학생 또는 지도교수의 출석을 요청하여 해명 또는 참고발언을 청취할 수 있다.

다. 학생처장은 교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품의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징계의 해제) 지도교수 및 학과장으로부터 징계 학생에 대한 징계 해제 의견서가 제출되면 학생처장은 교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은 다음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제9조(통보) 포상은 공개하되 징계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생처장은 위의 사실(포상, 징계)을 학생지도위원회, 학과장, 교무처장 및 학부모와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예의

제28조(예절) 본교 재학생은 기독교정신에 의한 교내의 생활을 통하여 학생 상호간, 특히 선후배간 예의를 철저히 지키고 품위 있는 행동으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모범과 귀감이 되어야 한다.

제29조(용모 및 복장) 본교 재학생은 용모 복장이 단정하고 겸손, 온유하며 화평과 거룩함으로 경건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제30조(교제) 본교 재학생은 고매한 품위를 갖추고 모범된 신앙생활을 통하여 타인에게 덕을 끼치며 이성간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정결하고 성숙한 교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제31조(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본 준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교무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2. 본 준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준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준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준칙은 199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